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43 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: 구자근・인요한・최수진

신동욱 • 박성민 • 박덕흠

김선교 • 강명구 • 이만희

박준태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잠재되어 있음.

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이에, 투표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가되지 않도록 작성하고, 사전투표소에서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가 투표용지에 표시되어 발급되도록 하는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,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151조의2

신설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82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1조의2(투표용지의 한국조폐공사 인쇄 의뢰 등) ① 제151조제1항

- ·제154조제1항 및 제211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여 투표용지가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때에는 투표용지가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의뢰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투표용지 등의 한국조폐공사 의뢰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
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51조의2(투표용지의 한국조폐
	공사 인쇄 의뢰 등) ① 제151
	<u>조제1항ㆍ제154조제1항 및 제2</u>
	11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를
	작성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
	리위원회는 한국조폐공사에 인
	쇄를 의뢰하여 투표용지가 위
	조 및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
	하여야 한다.
	②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
	는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
	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
	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
	록 하는 때에는 투표용지가 위
	조 및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
	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발급
	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의뢰
	<u>하여야 한다.</u>
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
	국조폐공사 의뢰 절차, 그 밖에
	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
	원회규칙으로 정한다.